



曹 基 跪
(保健社會部 衛生局長)

1. 序 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정치·사회·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가사회의 선진화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도약의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해 국민보건의 영양수준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위생분야도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던 중요한 분야로서 국민, 관련업계 그리고 행정기관등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89년도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의 선진화작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사회의 민주화 및 국제개방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바로 우리사회의 선진화의 주요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바로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바, '89년도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시책의 방향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수준의 제고를 통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생수준의 향상은 최근 우리사회의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제조·가공업자, 요식업자등의 자율적 노력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부의 위생·지도 감독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비위생적 식품의 판매 그리고 비위생적인 식수의 공급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요인을 과감하고 철저히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비자단체의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의 향상을 위한 제노력도 효율적으로 지원되어 정부와 제조·가공·판매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로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89년중 추진되는 주요사업을 보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도 이젠 즐기는 여가생활의 한부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업소의 청결과 위생수준 향상의 지속적 유도와 함께 서비스 수준을 높여 새로운 식당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소나 위생시설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고 있는 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농약사용증가와 환경오염 증가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오염과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농약잔류량 및 중금속오염을 사전에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제조·가공식품의 빌달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첨가물의 규격기준을 정비·국제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도 국민대부분이 소비하는 다소비식품인 두부, 연제품, 식용유, 제과류등에 부정·불량품의 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바, 이의 근절을 위해 감시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확보하고 관련업체의 동업자조합과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감시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88년중 대도시 수도물과 농어촌의 간이급수의 위생 및 안전성과 이와 관련 상수의 불법시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 바, 도시의 수도물과 농어촌 간이급수의 효과적 위생관리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상수의 유통에 대한 지도·관리 체제를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 및 경제사회적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한 식생활 형태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이와관련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 '89. 주요시책

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올림픽을 대비 추진하였던 식품접객업소의 주방공개, 객장 및 화장실청결등의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청결유지관리 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위생감시측면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되 영업자 스스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의 방법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등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위생 및 직업교육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접객업종사자가 교육내용인 개인위생과 서비스요령등에 대한 시청각교재 개발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되 신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유통되고 있는 농작물의 농약잔류량과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곡류, 야채류, 과실류와 어패류에 대하여 국립보건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하여 지역별, 산지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는데, '89년에도 농산물은 보리, 배추, 사과등 28개품목에 대하여 다이아지논등 13종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케하고 수산물은 고등어, 꽁치등 20종 어류에 대하여 비소, 수은등 7종 중금속 함유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88.9.13. 고시되어 '89.1.1.부터 시행계획인 농산물잔류량 허용기준은 잔류농산물 모니터링 시 안전성 판단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적용되고 아울러 수입농수산물의 검사 기준으로 적용되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위생상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속근거 규정이 되는 수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89년 상반기중 제정할 예정인데 줄, 고막등 10종의 수산물에 대하여 수은, 비소등 7종 중금속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다. 첨가물 규격기준의 정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로는 공정규격대상인 363종(화학적합성품 330종과 천연 및 혼합제제 33종)과 자가규격대상인 1,500종의 천연첨가물이 있다.

'89년중에서 현재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대상 첨가물을 보존료, 착향료, 감미료등 용도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첨가물에 대한 적정사용 기준을 마련 또는 보완하여 우리나라 규격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학계, 연구 기관, 관련업체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FDA와 WHO의 기준을 충분히 참조하여 국제규격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

최근 우리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이 상당량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 '88년중에도 중앙과 지방의 321개 상설기동 감시반에 의하여 8,551건의 부정·불량식품이 적발(점검건수 69,593건)되었다. '89년중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민식생활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부정·불량식품 추방분위기 조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단속체계를 확립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어묵, 콩나물, 두부, 식용유, 병과류, 장류등 국민대다수가 일상 먹고있는 식품을 주대상으로 하고 시장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토록하여 일상 다소비식품중 부정·부량식품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체계적을 기동감시반을 편성하고 전국적인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망을 형성하며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식품위생단체의 자율지도원의 활동을 조장·지원할 것이다. 특히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엄단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마. 음용수 수질관리개선

환경오염의 증대와 대도시 수도나 농어촌의 간이급수시설의 노후 또는 관리소홀은 국민이 상용하는 음료수의 위생 및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서울등 대도시의 수도물의 경우 최수원인 강물의 오염 가능성, 수도관의 노후, 수질의 관리소홀등이 잠재적 위협요인이다.

그리고 급수관련업무의 부처별 다원화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급수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의 보장을 위하여는 식치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음용수 수질검사기준을 보완하여야 하며 정수장 뿐 아니라 가정의 수도전까지 수질조사나 평가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이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89년중에는 수질검사 기준을 보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확인·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정수장 관계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급수의 위생관

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부처등에 시설개선 및 관리철저를 강력히 촉구하여 나갈 예정이다.

바. 식품위생법령, 제도개선 내용 및 방향

국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형태의 변화를 수용하고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과 상호 경쟁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공식품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기하기 위한 식품위생법개정법률이 '8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89.1.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형행 영업 및 품목제조허가제를 신고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 있어서 위생 및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업 또는 품목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2) 동업자조합(단체)의 설립단위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전국단위로 조정함

(3) 지금까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품목제조정지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동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부여근거 마련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여 규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식품판매업자에게도 위생상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대상은 규모가 큰 판매업소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제도는 '86. 5. 10.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시 최초로 도입하였고 당초 이 제도는 보건사회부에만 설치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도 1988년까지만 중앙에 설치된 기금에 넣도록 하였으나 '89년부터는 시·도 단위에 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해당 시·도 기금에 넣도록 하여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방향

법개정에 따른 허가제도, 과징금처분기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수입개방, 경제장류화시책, 소비자인 국민의 식생활방식 변화 등 국내외 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관리제도 개선, 업종의 재분류조정, 영업허가권의 하부위임, 표시기준·행정처분기준 및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업계,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금년중에 확정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존음료수 제조업 등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도 정부의 경제자율화 시책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식품의 제조·유통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